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371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484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371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가소1045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채린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4. 4. 5.

판결 선고2024. 5. 1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가소104524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32,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3,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22. 2. 19. 12:3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중, 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또는 정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과 원고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이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 및 상황은 별지와 같다(원고차량 : #1, 피고차량 : #2).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은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22. 2. 24.부터 2022. 2. 28.까지(5일)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2022. 2. 28.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2022. 3. 1.부터 2022. 3. 11.까지(11일)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각각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2022. 3. 10. D에게 합의금 1,800,000원(= 향후치료비 343,780원 + 휴업손해 1,306,220원 +

위자료 150,000원) 지급

○ 2022. 3. 23. F병원에 치료비 294,440원 지급

○ 2022. 4. 21.까지 E한의원에 치료비 등 합계 1,386,490원 지급

○ 합계 : 3,480,930원

마. 그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를 청구하였고, G기관은 2023. 2. 13.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이 90%: 10% 이다.'라는 취지의 심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심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3,132,837원(= 3,480,930원 × 90%)을 지급한 다음, '경미한 접촉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사고로 D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험금 액수 또한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이고,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② 원고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좌우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는 바람에 정차 또는 주차한 피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③ 피고차량은 주차구역을 다소 벗어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대각선 형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였고, 그러한 피고차량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90: 1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와 D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의 쟁점 중 다른 하나는 피고차량의 운전자 D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인데,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다소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손상 정도 또한 크지 않으며, 수사 단계에서의 마디모1) 분석 결과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그로 인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피고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운전자인 D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로 말미암아 D의 신체나 건강에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②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유무 및 그 정도는 피해자의 자세와 건강 상태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경과 관찰 등은 전문가인 의사가 문진이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E한의원 의료진의 D에 대한 진단 및 입원 치료는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D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의료진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위 의료진이 진료수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D의 증상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단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차량 운전자인 D의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지급된 보험금의 적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중 마지막 하나는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정한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그 항목별로 살펴본다.

1)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이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각각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각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으로 합계 1,680,930원(= F병원 치료비 294,440원 + E한의원 치료비 등 1,386,4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 등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을 거쳐 지급되는데,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보더라도 특별히 과잉 또는 허위 치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지급된 치료비 등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게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위 343,780원 상당의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휴업손해 D이 이 사건 사고로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D의 휴업손해를 1,306,220원(= 2,881,387원2) × 0.85 × 16일/30일,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내용과 D의 상해 정도 및 치료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충돌 부위와 그 정도, D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는 135,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구상 및 부당이득 범위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재산상 손해 : 2,987,150원(= 기왕치료비 1,680,930원 + 휴업손해 1,306,220원)

○ 원고차량 과실 비율 : 90%

○ 위자료 : 135,000원

○ 구상 금액 : 2,823,435원(= 2,987,150원 × 90% + 135,000원)

2) 따라서 피고는 G기관의 위 심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3,132,837원에서 2,823,435원을 공제한 나머지 309,40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9,4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판사이의진

별지

1)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차 대 차, 차 대 사람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운동변화 분석 프로그램이다.

2) 위 입원 기간 당시의 도시일용노임 월 소득보다 적은 액수이다.